



특허심판제도

심판관 박종효

목차

1. 특허심판제도

제1부 서론

- I. 특허심판제도의 개요
- II. 특허심판원
- III. 특허법원

제2부 심판종류별 내용

A. 당사자계 심판

- I. 무효심판
- II.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 III. 권리범위확인심판
- IV. 정정심판
- V. 정정의 무효심판
- VI. 통상실시권허여심판

B. 사정계시판

I. 심판의 종류

II. 절차

제3부 특허심판의 절차

I. 특허심판의 절차

<참가>

II. 특허심판의 종료

제4부 재심

제5부 소송

① 심결취소소송

② 상고

2. 특허침해의 기본대응 및 배상

3. 국가별 특허분쟁 동향 및 분쟁사례

4. 국내의 특허별 분쟁대응 사례

<고덕은 이번호>

<참가>

(1) 의의

- 타인간에 계속 중인 심판에 제3자가 자기의 법률상의 이익을 위하여 개입하여 당사자 일방의 심판을 보조하거나 스스로 당사자가 되어 심판에 관여 하는 것
-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진행중인 심판사건에서 함께 다룰 수 있는 기회 부여
- 당사자계 심판에 한해 허용되며 사정계 심판에는 불허

(2) 종류

가. 공동소송적 당사자 참가

- 참가인이 독자적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즉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가 타인간의 심판에 참가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청구인 측에 공동청구인으로 참가
- 그 지위, 권한은 타 청구인의 지위, 권한과 동등하고, 따라서 일체의 절차를 행할 수 있음
- 피참가인인 청구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한 후에도 그 심판절차의 속행이 가능
- 참가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

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당사자의 어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심판에 참가하는 형태이며, 당사자 중 어느 측에도 참가 가능
- 참가인의 법적 지위는 피참가인에게 종속
- 당사자가 심판의 청구를 취하하였을 때에는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없음
- 예,
 - 무효심판: 실시권자 또는 질권자 등이 특허권자를 보조
 - 권리범위확인심판: 피청구인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는자가 피청구인을 보조

(3) 참가의 요건

가. 심리종결 전일 것

- 타인 간에 심판이 계속되고 있고 심리종결전이어야

나. 참가의 이익이 있을 것

- 1) 당사자 참가: 당사자적 지위에서의 이해관계 필요
- 2) 보조 참가: 그 심결의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입증되어야

다. 절차능력이 있을 것

-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요구되는 행위능력

(4) 참가의 절차

가. 신청

- 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
- 부분은 당사자 및 타 참가인에게 송달---의견서 제출기회 제공

나. 허부의 결정

- 심판에 의하여 허부를 결정
-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불가

(5) 참가의 효과

- 피참가인과 공동 보조하에 일체의 심판절차를 수행가능
- 피참가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방법 등을 독자적으로 제출 가능
- 독자적으로 불복하는 것도 가능
- 당사자가 심판청구를 취하하는 경우
 - 당사자 참가인: 심판절차 속행 가능
 - 보조 참가인: 심판 종료, 속행 불가

8. 본안심리

- 심판청구서가 형식적인 기재요건 등 법령이 정하는 방식에 적합하고(부적합하면 결정각하)
 - 수수료가 납부되고
 - 적법한 심판청구로서(부적합하면 심결각하)
 - 사건이 성숙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당사자간의 주장과 증거 등을 살펴서
- 심리결과
 -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때에는 그 청구를 인용
 - 청구인의 주장이 부당한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

(1) 의의

- 심리란 당사자가 사건에 관한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과 심판원이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조사해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진부를 판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절차

(2) 심리진행

- 특허심판은 사인간의 분쟁해결에 이용되는 제도이지만 심판의 결과가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



기도 하기 때문에 그 심리과정에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는 당사자주의 요소이외에 심리진행의 주도권이 심판관에게 주로 주어지는 직권주의적 요소도 가미되어 있음

○ 당사자제 심판 중 특허무효심판, 존속기간연장 등록무효심판 및 정정무효심판:

- 구두심리를 원칙,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서면심리에 의할 수도

○ 그 이외의 심판:

- 서면심리가 원칙,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구두심리

가. 구두심리

(1) 심판장은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미리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

(2) 그 심리대상이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공개

(3) 매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고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

(4) 민사소송법 상의 조서작성에 관한 규정, 심판절차상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 등은 심판에도 준용

나. 서면심리

-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만으로 심리
-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와 보충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중심으로 심리하되,
- 양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에 불분명한 점이 있으면 심판장은 보충지시를 하여 이를 명백히 함
- 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었다고 판단될 때 심리를 종결하고 심결

다. 면담

- 특, 실 사정계 사건에 있어서는 면담절차가 활발함

- 고도한 기술 심판 사건에 있어서는 방대한 심판기록보다는 면담을 통해 당사자, 그 대리인 등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함으로써 직접 사건의 쟁점 및 실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음

(3) 직권주의

- 특허심판은 그 심결의 결과가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대세적 효력 또는 해석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공익적, 국가산업 정책적인 관점에서 대세적 해결을 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상의 변론주의 원칙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직권주의를 강하게 가미

가. 직권탐지주의

○ 당사자의 주장에 반드시 구애받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적극적으로 사실을 탐지하고 증거조사 가능

- 1)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한 심리
 -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 또는 취하한 이유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 가능

○ 예: 청구인이 주장한 이유 및 증거로는 무효시킬 수 없는 경우에도 심판관이 탐지한 이유나 증거에 의하여 무효가능

- 직권심리의 경우 심리의 결과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통지하여 의견 진술기회 부여하여야 함
- 공익상 요청된 원칙이기는 하나, 심판관의 적극적 의무는 아님
- 당사자가 심판으로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에 관하여는 심리 불가

2)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 증거조사:

심판부가 증거방법으로부터 증거자료를 감독하는 행위, 즉 증인, 감정인 또는 당사자 등의 인적 증거

를 신문, 청취하고 문서, 검증물의 물적 증거를 검사하는 심판상의 절차

○ 증거보전:

심판절차 내에서 본래의 증거조사 시기까지는 기다리다 가는 그 증거방법의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본안의 심판절차와는 별개로 증거조사하여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심판절차

• 예:

- 증인으로 될 자가 사망이 임박하였거나 또는 검증물의 현상이 변경되거나 멸실될 염려가 있는 경우 미리 증거조사를 해 두는 것

○ 심판에 있어서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존 가능

- 진실발견을 위하여 권능을 부여한 것이며, 의무는 아님

- 그러나 심판의 증거조사. 증거보전 시 그 결과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 의견서 제출기회 부여해야

★ 직권조사 사례

1) 방식적 사항에 관한 직권조사 사례

a. 심판청구서의 방식심사

- 권리표시에 오기가 있는 경우의 조사
-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내의 청구인지 여부의 조사

b. 중단된 심판 또는 재심절차의 수계자의 조사

c. 등록원부의 조사

d. 청구인이 이해관계에 관한 당사자 적격을 가졌는지 여부의 조사

2) 실체적 사항에 관한 직권조사 사례

a.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의 심리

b. 원사정의 거절이유가 부적당한 경우에 적당한

거절이유 유무의 조사

c. 원사정의 거절이유가 불충분한 경우

(4) 직권진행주의

- 소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개시된 후에 절차의 진행 및 정리가 법원의 주도하에 행해지는 원칙

- 이에 대해, 절차의 진행 및 정리를 당사자의 권한 내지 책임으로 보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주의를 당사자진행주의라 함

1) 심판의 진행

-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내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구두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음(신속, 원활한 처리)

- 다만 구두심리기일 등에 불참하여도 민사소송상의 '의제자백'의 효과 (상대방 주장사실을 자인하는 것으로 간주)는 발생하지 않음(그러나 사실상의 불리한 판단 가능)

2) 기일의 지정, 변경

- 심판장은 기일을 지정한 경우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 가능

3) 중단된 절차의 수계명령

- 심판관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여야 할 자가 수계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4) 심리방식의 선택

- 심판종류별 심리방식에 원칙은 있지만, 심판장은 심리방식에 대한 선택 가능

5) 심리의 병합 또는 분리

-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동일한 2이상의 동일



종류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 가능

- 심판은 더 이상 진행할 수도 없고, 심판의 계속을 전제로 된 모든 심판에 관한 절차는 실효
- 청구인은 취하 후 동일내용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 가능

II. 특허심판의 종료

1. 개요

- 심판은 청구로 개시되어 심결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임
- 심판청구의 취하 등 그 이외의 사유로도 종료
- 민사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청구의 포기, 피청구인의 인낙, 심판상의 화해에 의해서는 종료되지 않음(직권주의 정신에 반함)

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가. 심판청구의 취하

(1) 의의

- 청구인이 청구한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행위이며, 심판의 계속이 종료됨
- 심판청구의 취하에는 안전성과 명확성이 요구되므로 조건부 취하 또는 하자있는 의사표시나 착오에 의한 심판청구의 취하의 취소는 불허

(2) 시기

-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가능하며, 다만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이 있었을 때에는 그 자의 동의가 필요

(3) 대상 및 방식

-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
- 심판청구취하서에 필요한 서류 첨부하여 제출하며, 심판장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

(4) 효과

- 그 심판청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

나. 청구권의 포기

- 청구권을 가진 자가 그 청구권을 스스로 소멸시킨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
- 민사소송법 제206조의 규정, 특허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3. 심결 등에 의한 종료

- 심판은 보통 심결로 종결되며, 심결의 확정으로 종료
- 넓은 의미의 심판은 그 형식에 따라 심결, 결정, 명령으로 구분

가. 심결

- 심판의 결론으로서 그 심급에서 심판사건을 종결시키는 법률행위
- 당사자 주장의 당부에 대한 공권력의 판단으로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기관의 종국적 판단

나. 결정

- 심판청구의 본안이 아닌 심판의 절차적 신청에 대하여 심판장 또는 심판부가 그 당부를 심리 판단하여 내리는 결론
- 예:
 - 방식에 위반되는 심판청구서의 결정각하
 - 심판장의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 참가신청에 대한 허부의 결정
 -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결정

다. 명령

- 심판장 또는 심판관이 그 자격으로 조처하는 심판진행상 필요한 간단한 절차
- 예:

- 방식위반에 대한 심판장의 보장명령
- 심판장 및 심판관의 자료 제출명령

4. 심결

가. 심결의 종류

1) 각하심결

- 심판청구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심판관 합의체에 의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
 -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청구
 -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
 - 심판청구서의 요지변경
 - 출원포기, 변경된 경우
 -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
 - 심판이 중복청구된 경우
 - 기간이 경과되어 청구된 경우
- 심판청구의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서 각하

2) 본안심결

- 심판요건을 갖춘 심판청구에 대하여 그 심판의 청구의 취지가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심결
- 인용심결: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
- 기각심결: 청구인의 주장이 배척

나. 심결의 방식

- 심결은 심결기관의 심판청구에 대한 종국적 판단이므로 그 내용은 명확히 표현되어야
- 심결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고 심판관이 기명날인하여야

〈심결문 기재 요령〉

- 심판의 번호
- 당사자, 참가인, 대리인 등의 성명, 주소(법인인

- 경우에는 그 명칭, 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 심판사건의 표시
- 심결의 주문
-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 포함)
- 심결의 년월일

다. 심결의 절차

(1) 심리종결통지

- 심판장은 심결에 앞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심리종결 통지를 하여야함
- 사건이 성숙되었음을 알리고 심리진행상황을 주지시켜 심리절차의 공정과 촉진을 기하고자 함
- 훈시 규정으로 이를 위반하여도 위법은 아님
- 심리종결을 발한 즉시 심결을 하여도 위법은 아님
- 심리종결통지 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리 재개 가능
- 심리종결통지 후에 이유보충서 제출 시는 심리 재개 검토후 필요시 심리 재개
- 심결문 등본의 발송 후에 제출된 이유보충서는 불수리

(2) 심결문 작성

- 주심이 합의 시의 결론의 요지를 정확히 반영하여 심결문 초안 작성
- 초안을 심판장 및 타심판관에게 회람
- 심결문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어 심결문이 완성되면 심판장 및 심판관이 날인

라. 등본의 송달

- 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의 정본을 당사자, 참가인에게 송달

마. 심결의 확정

- 심결 및 결정은 그 것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가 법정기간내에 불복절차를 밟지 않거나 불복



절차를 밟았으나 심결 또는 결정이 중국적으로 지지를 받아 더 이상 다룰 수 없게 되면 확정

- 특허할 것으로 한다는 심결이나 정정심판에서 정정이 인정된 경우의 심결은 심결등본의 송달이 있는 때 확정

바. 심결의 효력

- 심결의 정본이 당사자 등에게 송달되면 심결의 기속력이 발생하며, 심결이 확정되면 심결의 확정력, 구속력 및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

1) 심결의 기속력

- 일단 심결 정본이 당사자 등에게 송달된 후에는 심판관도 그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데, 이를 심결의 기속력이라 함
- 법적 안정성, 심판의 신뢰성 및 당사자의 이익 보호
- 그러나 "심결의 경정", 즉 심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함이 없이 단순한 표기의 오류 등을 정정하는 것까지 방해하는 것은 아님

2) 형식적 확정력

- 확정된 심결은 재심사유가 없는 한 소멸 또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즉 재심에 의하여만 취소, 변경을 구할 수 있다.

3) 일사부재리의 효력

- 심판의 심결이 확정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법적 안정과 평화를 기하고 심판의 권위를 지키는 한편 당사자를 보호하고 심판경제를 도모

4) 심결의 구속력(대세적 효력)

- 심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참가인 뿐만 아니라

제3자 및 법원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4. 심판비용

가. 의의

- 심판부, 당사자 또는 참가인 등이 심판절차에서 지출한 비용

나. 범위

- 심판비용의 범위, 금액, 납부 등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 준용
- 당사자가 심판과정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이 법률상의 심판비용은 아님
- 특허청 고시 제90-4호(심판비용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심판청구료, 변리사의 보수, 심판서류의 작성료,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의 숙박료 또는 여비 등이 해당
- 변리사가 수인인 경우에도 1인이 대리한 것으로 간주

다. 부담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건의 심결 또는 결정으로 정함

- 1) 거절사정, 특허취소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경우 —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
- 2) 정정심판과 통상실시권허여심판 — 청구인
- 3) 당사자계 심판
 - 심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정함
 -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담
 - 일부패소 —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공동부담
 - 공동당사자가 패소 — 평등의 비율로 부담
- 4)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특허권자)이 경고 등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고 답변서의 제출 등 방어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판청구가 인용된 경우 — 청구인 부담
- 5) 특허의 무효심판 청구후 정정심판에 의하여 그 명세서가 정정된 결과 무효의 사유가 소

별된 경우 — 피청구인인 승소자도 일부 또는 전부 부담

- 6) 심판청구의 취하 시 — 취하하는 자
- 7) 심판청구가 화해, 권리이전, 실시권의 설정 등을 이유로 심결각하된 경우 — 각자 부담 가능

라. 심판비용액의 결정

- 심판비용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에 청구에 의하여 심판원장이 결정
- 심결이나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때까지 지출한 비용이 확정되며 그 후에 구체적인 비용액을 산정
- 심판원장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마. 강제집행

- 심판의 비용액 또는 특허법에 의한 대가와 보상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그 강제집행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519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
- ◆ 채무명의란 강제집행에 의해 실현되어야 할 급부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명확히 하여 집행기관에 의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도록 한 문서의 총칭
- 행정실장은 청구인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문 부여

바. 심판비용의 예납

- 심판에 있어서 비용을 요하는 행위(증거조사, 증거보전 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에게 예납하게 할 수 있음
- 예납비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납을 명하고, 그 비용이 남는 경우에는 반환

1. 의의

- 확정된 심판의 심결 또는 특허법원,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그 심결 및 판결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심결, 판결을 한 기관에 대하여 그 심결이나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그 사건을 다시 심결 판결하여 줄 것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 방법
-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그 심결이 재심 청구 후에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법, 부당한 청구로써 심결각하
- 심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기는 등 법적 안전성이 부여되나, 그 심결이 절차, 자료, 판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심결의 적정성, 신뢰성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사회적 공정성 실현에 반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

가. 재심의 사유

- (1) 민사소송법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특허법 제178조)
 - 1) 법률에 의한 심판기관을 구성하지 아니하였을 때
 - 2) 법률상 그 심판에 관여하지 못할 심판관이 심판에 관여한 때
 - 3) 대리인의 수권이 흠결된 경우
 - 4) 심판에 관여한 심판관이 그 사건과 관련하여 죄를 범한 때
 -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백을 하였거나 심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된 때
 - 6) 심결의 기초가 된 증거인, 문서, 기타 물건 등이 위조된 것일 때
 - 7)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선서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허위진술이 심결의 증거로 된 때

제4부. 재심



- 8) 심결의 기초로 된 민사 또는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
- 9) 심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 10) 재심을 청구할 대상 심결의 이전에 있었던 확정심결과 저촉될 때
-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영업소로 하여 심판을 청구하여 심결에 이른 때

(2) 사해심결에 대한 재심의 사유(특허법 제 179조 제1항)

-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하게 한 때

2. 재심의 관할

- 재심은 재심을 제기한 심결의 심판부의 전속 관할
-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한 판결에 대한 재심은 상급법원 관할

3. 당사자

- 일반적으로
 - 청구인: 재심의 대상으로 하는 심판의 패소자
 - 피청구인: 승소자
- 사해심결에 대한 재심의 경우
 - 청구인: 권익을 침해당한 제3자
 - 피청구인: 재심의 대상으로 하는 심판의 당사자

4. 청구기간

- 재심은 당사자가 심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청구해야

-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상기 30일의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재심의 기초가 된 심결의 등본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

5. 청구

- 그 심급의 절차에 따라
- 확정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동시에 그 확정심결을 대체하는 심결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

6. 재심의 심리

- 방식심리
 - 소정의 수수료 납부여부 심리
 - 재심청구 요건 구비여부 심리
 - 본안 심리
 - 그 대상인 심판의 종류와 심급의 절차에 준해서 심리
- 예: 무효심판의 확정심결에 대한 재심의 절차는 그 무효 심판의 심리의 절차를 따름
- 확정심결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가 정당한 때
 - 원심결취소, 원심결과 다른 취지의 심결
 - 원심결과가 정당할 경우 — 각각

7. 심리의 제한

- 직권주의를 적용하지 않음
- 청구이유의 범위 내에서 심리

8. 재심확정의 효과

가. 원심결의 취소

- 재심에 의하여 심판청구가 이유있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원심결은 취소

나. 특허권 효력의 제한

-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은 재심 청구 전에 선의로 수입 또는 국내에서 생산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아니함
- 재심청구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발명실시 사업을 하거나 또는 사업설비를 가진 자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범위 내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짐
-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자가 재심청구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실시사업을 하거나 사업의 설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목적 및 발명의 범위 내에서 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짐

제5부. 소송

1. 심결취소소송

- 특허심판원의 심결이나 각하결정에 대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 제기 가능
- 특허법원에서의 소송은 형식적으로는 제1심 소송이나 심판원의 심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제2심 소송

가. 소의 대상(특허법 제186조 제1항)

- 심결에 대한 소
- 특허법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특허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한 소
- 심판(재심) 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

나. 제소기간

-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 원고 및 피고

1) 원 고

- 당사자, 참가인 또는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된 자

2) 피고

- 사정계 사건 및 정정심판: 특허청장
- 당사자계 사건: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라. 불복의 제한

- 불복의 소는 심결 및 각하결정에 대한 것으로 제한(심결전치주의)

마. 소 제기 통지 등

- 법원은 정정심판을 제외한 당사자계 심결 취소소송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심판원장에게통지
- 소송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의 재판서 정본을 심판원장에게 송부

바. 심결 등의 취소

-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서 그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
- 심판관은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시 심리하여 심결 또는 결정
- 취소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원을 기속

2. 상 고

-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 가능

발특2001/7

